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,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기준(가정용)과 형평성 차원에서,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(안 별표 3)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 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15조)
- 기숙사의 가구분할조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(안 제3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합 의 : 감사담당관실, 기획예산담당관실,
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, 하수과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
 - 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적용중인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, 일반용 요금에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부과기준인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